

2012년(제3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기출문제
- 행정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

행정법

【문 1】

甲은 丙이 자신에게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丙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사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청 乙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甲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乙의 비공개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를 검토하고 판단해 보시오.(판단 범위에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상충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25점)
2. 乙은 1심 소송 계속중에 범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甲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는지 판단해 보시오. (10점)
3. 만약 乙이 최초 비공개결정 당시에 이미 위 2.에서 乙이 추가한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처분사유가 적법한지 판단해 보시오. (15점)

*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문 2】 다음을 논하시오.

1. 신뢰보호의 한계 (20점)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0점)

민 법

【문 1】 다음 각 문제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기재하시오.

甲은 乙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00 대 236㎡(이하 'X 토지'라고 한다) 위에 乙의 승낙 없이 합부로 2층 건물(이하 'Y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0. 12. 20. 丙에게 Y 건물을 4억 원에 매도하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Y 건물을 인도하였다. 丙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Y 건물 중 1층 부분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11. 1. 10. 丁에게 Y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1. 1. 16.부터 2013. 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丁은 2011. 1. 16.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Y 건물 중 2층 부분을 인도받아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을 마쳤다. (아래의 각 문항은 독립된 사항임)

1. 가. 丙과 丁에 대하여 Y 건물에서의 퇴거,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乙의 청구는 각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20점)
나. Y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丁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5점)
2. 위의 사안과 달리,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 丙과 함께 Y 건물을 신축한 다음 甲 명의로 2/3 지분, 丙 명의로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2011. 1. 10. 丁에게 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Y 건물을 임대하였고, 丁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Y 건물을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라는 이유로 丁에 대하여 Y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15점)

【문 2】 아래 사실관계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의 본소청구 및 乙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소각하, 청구 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 다만 청구일부인용의 경우 인용범위 적시)을 기재하시오. (10점)
2. 乙의 아래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20점)
3. 甲의 아래 밑줄 부분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 및 논거를 서술하시오. (20점)
 - X 토지에 관하여 1963. 7. 5.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0. 6. 5.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5. 5. 12.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4. 6.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X 토지에 인접한 Y 토지의 소유자인 C는 1969. 4. 7. Y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X 토지 200㎡ 중 2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위에 건축되었다.
 - C가 2005. 8. 6. 사망하여, Y 토지 및 위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8. 16.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C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C와 D 사이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발견하고, 2005. 11. 15. D를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1. 1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甲은 2012. 4. 2. 乙을 상대로 하여, ‘乙은 甲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甲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乙은 변론기일에서 甲의 청구를 모두 다투면서 ‘乙이 C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A로부터 B로 변동된 1990. 6. 5.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2010. 6. 5.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점유는 적법하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甲을 상대로 ‘甲은 乙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 다시 甲은 변론기일에서 乙의 반소청구를 모두 다투면서 ‘乙이 D를 상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X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설령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은 취득시효 완성 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은 2010. 4. 6.부터 현재까지 월 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법

【문 1】

피고 乙이 원고 甲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무단으로 목조건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자,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위 목조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丙은 위 소송계속 중 원고 甲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원고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甲은 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원고 甲의 청구에 관하여는 별다른 판단 없이 원고 승계참가인 丙 승소판결을 하였고, 피고 乙은 피항소인을 원고 승계참가인 丙으로 기재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단, 다음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하다)

1. 피고 乙이 원고 甲의 탈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甲이 제1심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러한 경우 원고 甲과 원고 승계참가인 丙 및 피고 乙사이의 다수당사자간의 소송형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제1심이 원고 승계참가인 丙의 승소판결만 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 항소심은 어떻게 판결하여야 하는가? (20점)

2. 원고 甲이 원고 승계참가인 丙의 승계효력을 다투면서 제1심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원고 甲과 원고 승계참가인 丙 및 피고 乙 사이의 다수당사자간의 소송 형태가 무엇인지 설명하되, 이러한 소송의 본안심리 및 판결방법, 상소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문 2】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본안의 항변 (25점)
2. 서증 신청의 방법 (25점)

형법

【문 1】

甲은 2011. 4.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자 그 소유의 광주시 오폭읍 능평1리 산 64, 65 입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위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어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자 甲은 헐값이라도 이를 처분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2011. 5. 16. 부동산개발업자인 A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자, 甲은 같은 날 A에게 위 각 토지를 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받았고, 중도금 5억 1,000만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달 이내에 A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터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 1억 5,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이 광주시에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는데 A는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명義는 거주 요건을 갖춘 A의 친구 B의 이름을 빌려 하기로 하였고, 甲도 이에 동의하여, 甲과 A는 매수인이 B로 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은 2011. 6. 8. A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B 명의로 대출받은 5억 1,000만 원으로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甲은 A로부터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1. 31. 광주시 오폭읍 능평리 일원 구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위 각 토지에 대한 거래가 수월하게 되자 2012. 4. 2.경 C에게 위 각 토지를 8억 원에 매도하고, 2012. 5. 2.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甲의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 (50점)

【문 2】

甲은 모바일 시스템용 PDA 및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을 택배회사 등에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마이엔진의 대표이사이다. 乙은 2009. 11.경 위 마이엔진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결과물로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 마이엔진의 대표이사인 甲에게 제출하였다.

丙은 위 마이엔진에서 시스템 사업부장으로 일하다가 2012. 8. 9.경 위 마이엔진을 퇴직한 다음 甲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마이엔진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어헤드원을 설립하였다.

한편, 乙은 위 마이엔진에서 丙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으나 甲에게는 丙의 퇴직과 관계없이 위 마이엔진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위 마이엔진의 고객들 사이에서는 乙이 丙과 함께 위 어헤드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는 소문이 돌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마이엔진 내에서도 乙이 2012. 9. 7.경 위 마이엔진의 주력상품인 ‘모바일센터’라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복사해 갔는데, 이를 위 어헤드원에 넘겼다는 소문이 돌았다.

丙이 퇴직한 이후 乙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甲은 그와 같은 소문을 전해 듣고 2012.9. 24.경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마이엔진의 오랜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그 담당자로부터 乙이 丙과 함께 찾아와 자신들이 위 어헤드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위 마이엔진이 다른 업종 진출을 위해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사업은 위 어헤드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니 이제 위 어헤드원과 계약해달라고 부탁하여 乙, 丙과 위 어헤드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2012. 9. 20.자 PDA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甲은 그날 오후 늦게 위 마이엔진의 사무실로 돌아와 乙에게 위와 같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乙로부터 택배회사와 그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들어보려고 하였으나, 乙은 그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황급히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그 후 乙은 甲으로부터 사무실로 돌아와 그 경위를 소명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휴대전화기를 끈 후 甲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甲은 직원들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乙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甲은 乙이 개인 소지품을 사무실에 두고 간 상태에서 사무실 출입문 열쇠도 갖고 있어 언제든지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할 것이 염려될 뿐만 아니라, 乙과 丙이 위 어헤드원 명의로 거래처를 가로채는 방식의 영업으로 인해 위 마이엔진의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乙과 丙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甲은 2012. 9. 25. 16:00경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乙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컴퓨터본체에 위 어헤드원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2012. 9. 25. 17:00경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乙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켜보게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구동되지 않았다. 甲은 다시 직원들에게 그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검색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 위 택배회사에 위 어헤드원 명의로 보낸 견적서, 위 택배회사와의 계약서, 마이엔진의 고객인 위 택배회사와의 계약을 어헤드원으로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乙과 丙 사이의 메신저 대화자료, 그밖에 위 마이엔진의 다른 고객들에게 어헤드원 명의로 보낸 견적서 파일이 포함된 이메일 송신자료 등이 발견되었다.

甲은 위와 같이 검색된 계약서 등을 근거로 乙, 丙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甲이 비밀 장치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

여 알아내었다고 甲을 고소하였다.

1. 甲의 죄책(죄명, 적용법조)을 논하시오. (40점)
2. 乙, 丙의 죄책(죄명, 적용법조, 죄수)을 논하시오.(특별법위반 부분은 제외) (10점)

형사소송법

【문 1】

1. 검사는 당초 2005. 8. 16.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5. 8. 16. 20:00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2005. 8. 16. 20:00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거실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죄명 및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논하시오. (30점)

2. 검사가 당초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 정당 추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A 정당 재정국장인바, 피고인 1은 A

정당이 자신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 정당이 3억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2는 3억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위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1은 A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자 연 3%의 당채 매입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 정당이 3억 원을 이자는 연 3%, 만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이 A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논하시오.(단,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사실에 적용한 법률과 제1심 법원이 범죄사실에 적용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으로 같음을 전제로 한다) (20점)

【문 2】

예비적·택일적 공소제기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상 법

【문 1】

甲은 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A회사의 이사선임 등 회사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으며, 甲의 아버지인 乙은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B회사가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되자, 乙은 甲에게 A회사가 수원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B회사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甲은 이를 승낙한 후 A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에게 위 토지매도를 지시하였다. 이에 丙은 A회사의 이사들이 반대할 것을 우려해 A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2. 5. 20.경 B회사의 대표이사와 A회사 소유의 수원 소재 토지 1필지를 대금 10억 원에 B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 계약 체결 당시 丙은 B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 매매사실이 A회사의 이사들에게 알려지면 시끄러워질테니 당분간 비밀로 해 달라고 얘기하였다.

한편, 丙의 친구인 丁은 개인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丙에게 丙이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1억 원짜리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 그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丁이 틀림없이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지불각서를 회수해 오겠다면서 지불각서 작성을 수차례 부탁하였고, 결국 丙은 2012. 6. 2.경 A회사 명의로 A회사가 1개월 후에 1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였고, 당시 사채업자도 이러한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1개월 후에 丁이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A회사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상의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A회사는 위 지불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한편, A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사항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 바, 丙은 A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2. 6. 10.경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금납입까지 마쳐졌는데, 그 신주의 종류와 수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발행되었고, 그 신주의 발행가액도 액면가액 이상으로 공정하게 결정되었다. 그 후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0.1%를 가지고 있는 戊가 2012. 8. 11.경 위 신주발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丙에게 항의하였다.

1. B회사가 A회사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A회사는 위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가? (20점)
2. A회사가 사채업자에 대해 지불각서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정당한가? (15점)
3. A회사의 위 신주발행에 대하여 戊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15점)

【문 2】 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과 적극적 공시력 (25점)
2.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25점)

부동산등기법

【문 1】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첨부하여 등기신청 할 경우의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50점)